

14-바.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

14-바-1.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

【원자료조사시기】 : 2025년 6월(사립대학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접수 및 집계)

【공시시기】 : 2025년 10월

【공시방법】 : 간접입력(한국사학진흥재단)

【공시내용】 : 2025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(대학, 전문대학, 대학원대학) 2025. 4. 1., (기술대학, 사이버대학) 2025. 3. 1., (학교운영 경비 부담 내역) 2024년 결산)

(단위: 천원, %)

기준 연도	법인명	학교명	구분	확보기준액 (A)	보유액 (B)	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 기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(%) (B/A)×100	학교운영 경비 부담 내역		
							수익금 (C)	부담액 (D)	부담률(%) (D/C)×100
			대학						
			전문대학						
			사이버대학						
			중등이하						
			합계						

■ 작성지침

【확보기준액】 :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, 「기술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10조, 「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」 제7조

- 대학: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중 연간 ‘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’의 합계로 하되, 300억원 이상
- 전문대학: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연간 ‘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’의 합계로 하되, 200억 원 이상
- 대학원대학: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연간 ‘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’의 합계로 하되, 100억 원 이상
- 사이버대학: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사이버대학의 경우 기준액 = ‘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’/2로 하되, 35억원 (전문학사학위: 25억원) 이상
-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: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경우 기준액 = 등록금수입 + 교육부대수입 + 교육외수입
- 중등이하교: 기준액 = (운영수익총계 - 전입기부, 원조보조수입) / 2
- 기술대학: 연간 학교운영경비총액에 해당하는 가액
 - ※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9조제7항에 의거 운영 중인 대학(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대학·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)의 경우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연간 ‘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’에 해당하는 가액의 2.8% 이상을 학교법인이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봄
 - ※ 「사이버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7조제5항에 의거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경우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연간 ‘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’의 50%에 해당하는 가액의 2.8% 이상을 학교법인이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봄

- 국가가 지원하는 대학의 경우 기준액: 운영수익 총계 - 전입금수입 - 기부금수입 - 국고보조금
- ※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7조제1항에 의거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대학·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.8%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봄

【보유액】 :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평가액 합

- ※ 단, 수익사업체 장기차입금, 기본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, 예금으로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제외

【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(%)】 : (보유액 / 확보기준액) × 100

【수익금】 : 수익용 기본재산 총수입 - 제비용

- 총수입 = 법인일반회계로 관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입금액 + 수익사업회계로 관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입금액 중 법인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
- 제 비용 = 당해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

【부담액】 : 당해연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교비회계로 전출한 금액

【부담률(%)】 : (부담액 / 수익금) × 100

- ※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8조 및 「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」 제8조, 「기술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11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액의 80%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부담하여야 하므로, 총 소득의 80%로 학교운영경비 수익금을 재산출

■ 참고사항

-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
-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